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관리계획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벤엘요양원

제1장 총칙

제1조(설치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33조의 2 및 제 33조의 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 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벤엘요양원 노인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벤엘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 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 (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구 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 책임자	원 장	벤엘요양원	041-673-1216
운영 담당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모니터링 담당자	영양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2. 제1항의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4.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CCTV 설치 운영 및 화상정보의 수집·처리
 - ②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 총괄
 - ③ 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④ 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및 개선
 - ⑤ 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⑥ 영상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 ⑦ 영상정보 파일보호 및 관리 · 감독
 - ⑧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제6조 (CCTV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

1. 벨엘요양원 CCTV 카메라 대수는 총 36대 설치하며, 설치위치는 각호와 같다.

카메라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6대	- 1층:16대 (생활실6대, 공용거실겸복도2대, 현관(출입구)1대, 엘리베이터1대) (야외2대, 주차장1대, 사무실, 식당1대, 조리실1대) - 2층:13대 (생활실8대, 공용거실겸복도2대, 프로그램실1대, (간호사실1대, 세탁실1대) - 3층: 7대 (생활실4대, 공용거실겸복도2대, 물리치료실1대)

- ① 생활실 18대(1층6대, 2층8대, 3층4대)
- ② 공용 장소 8대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각층 복도 6대)
- ③ 외부 장소 4대 (현관, 주차장, 야외 2대,)
- ④ 그 외 장소 6대 (식당, 조리실, 세탁실, 사무실, 간호사실, 엘리베이터)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1층 주출입구에 부착하고 규격은(280mm x 280mm)으로 설치한다.
3.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원장실과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 ① CCTV 운영모니터
 - ② 디지털 녹화기
 - ③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영상정보 성능,촬영시간,보관기간,저장장치 또는 기기,열람장소,삭제주기 등)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 (130만 화소)
2. CCTV 촬영시간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영상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960), 초당 10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원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원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8조 (안내판의 부착장소)

정보주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 ·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요양원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9조 (CCTV 사용제한)

1. 제6조의 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등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①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②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 ③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10조 (운영자의 금지행위)

- ① 종사자의 노동 감시, 사생활 감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 ② 영상자료를 외부로 유출, 오용, 남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스마트폰 어플 등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기관 외부에서 영상 정보로 접근, 영상자료를 열람, 모니터링하는 것은 금지되는 행위이다.

제11조 (화상정보 처리 제한)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 ·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영상정보 열람가능 사유)

1.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 또는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일 경우 의학적 소견서나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2. 학대 증후가 명시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열람 할 수 있다.
3. 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 정당한 권한이 있는 증표(신분증, 조사계획서, 공문서등) 제시하여 요청 할 수 있다.
4. 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제7제1항에 따른 노인 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노인학대 사건의 조사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는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및 서류를 제시하여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 (영상정보 열람 요청시 제출 서류)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열람 할 수 없다.

- ① 의학적 소견서(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또는제2호)
- ②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영상정보 열람 요청시)
- ③ 공문서, 조사계획서, 신분증(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
- ④ 조사계획서, 신분증(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3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5조의 제7제1항)

제13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관람일 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점 제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점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 · 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①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②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 ③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 ④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 ⑤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4.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제한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 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7. 열람의 범위는 열람 목적등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급자, 수급자의 보호자, 책임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정보주체 당사자 개인영상정보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다.
8. 열람 요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인 후 열람이 가능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열람 할 수 없다.
9. 열람 요청자가 다수일 경우 특정한 일시를 정하여 일괄 열람 할 수 있다.
10. 법 제33조의3제1항제2호에따라 관계공무원은 노인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열람요청시 공문서,조사계획서,신분증 제출시 열람할 수 있고, 노인전문보호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조사계획서, 신분증 제출시 열람 할 수 있다
11. 책임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요청을 거부 할 수 있다.
 - ①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 ② 천재지변, 화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이 소실, 훼손되어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열람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수급자의 안전사고등과 관련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수급자의 피해의 정도, 사생활침해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수급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1. 제11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 결과통보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화상정보 설치에 따른 준수사항)

화상정보 설치 · 관리하는 자는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과 장기요양기관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3. 수급자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제16조 (화상정보 보호조치)

1.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장치 설치 장소를 출입 제한구역으로 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자의 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다.
2. 제 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 권한은 벤엘요양원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3.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 권한을 부여 받는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17조 (화상정보 보관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 조치하도록 한다.

제18조 (장비관리)

1.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0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대장에 따라 주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2. 책임자는 CCTV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 (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령 등을 준용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개인정보 보호법」
3.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4. 「통신비밀보호법」
5. 「행정절차법」
6. 그 밖의 관례 법령